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07
----------	------

2017년 4월 19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7년 4월 3일, 김춘수 의원(찬성자 11명)
- 나. 회부일자 : 2017년 4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7년 4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춘수 의원)

가. 제안이유

일괄입찰공사 등 설계적격심의 비리 발생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이 개정(2016.12.08.)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1) 감점부과 범위를 조정함.(안 제14조제2항)
-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 행위에 대한 감점기준을 강화함.(안 별표2)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훈령(제783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이 일괄입찰공사 등에서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 행위 발생 시 입찰참여업체에게 부과하는 감점을 상향 조정함(개정, 2016.12.08)에 따라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안 제14조제2항은,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¹⁾ 감점기준에 대해 감점한도를 현행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이는 훈령에서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항목의 범위가 최대 15점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으로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의지로 보여짐.

[표 1] 본 조례 관련 현행 및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 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생략) ② ----- ----- 총 15점의 ----- ----- -----.

- 다음으로, 안 별표 2의 제1호(적용기준) 역시 훈령에 맞추어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사유를 추가하고 감점적용기

1)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①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② 부정행위: 자기 회사의 이익이나 상대방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입찰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감점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입찰참여 업체들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 감점적용기간의 경우, 감점 적용 개시일을 현행 ‘적발일’기준에서 ‘감점부과 결정일’기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마다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기하려는 측면과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여 업체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이해되며 현행보다 합리적이라 여겨짐.

[표 2] 본 조례 관련 현행 및 개정안

현행			개정안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 적용 기간	감점사유	감점	감점 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 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2	적발일로 부터 1년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 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 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 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 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 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 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 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 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 부터 4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 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 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	감점부과 결정일
주1) ~ 주2) (생략)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부터 2년
주1) ~ 주2) (현행과 같음)	

- 다음으로, 신설되는 안 별표 2 제2호(적용방법)의 다목(표 3참조)은 그 밖에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표 3] 본 조례 관련 현행 및 개정안

현 행	개정안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2. 적용방법 가. ~ 나.(생략)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2. 적용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 여기서, 훈령으로부터 준용코자 하는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2)은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규정」 [별표 10] 감점기준 1. 생략

2. 감점 부과방법

- 가. 감점은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감점사항과 관련된 사업의 심의를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감점은 소속 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점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업체에게 부과한다.
- 다. 대표 입찰사가 아닌 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동일한 기간 동안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라. 제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

3. 감점 적용방법

- 가. 해당 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에서 일괄, 대안 및 기술제안입찰과 관련하여 부과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다른 위원회의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 감점, 감점기간 등은 감점을 부과한 위원회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
-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감점조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 다.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마감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마감일부터 최종 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한다.
- 라.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감점은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한다.

훈령〔별표 10〕의 제2호 감점 부과방법과 제3호 감점 적용방법, 제4호 감점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도 서울시가 그대로 준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금번 개정안의 취지는 대상사례 발생 시 불필요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명시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훈령〔별표 10〕 제2호 라목인 ‘제1호(감점기준)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 기타 감점은 총점차등 후에 적용한다’라는 규정은 지난 2016.12.8.일 훈령 개정 당시 신설된 사항으로,
- 비리감점과 기타감점(안〔별표 2〕의 비리감점 기준 이외의 일반 감점)을 총점차등 전·후로 구분 적용함으로써 기타감점에 비해 비리감점의 벌칙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이며,〔표4〕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리감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투찰업체와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 가격경쟁 등으로 순위를 유지하거나 역전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 건전한 심의 및 입찰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감점 취소

가. 감점을 받은 업체가 감점의 취소나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부과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점의 취소나 정정은 감점을 부과받은 업체가 감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한 경우에만 한다.

[표 4] 총점차등에 따른 감점적용 방법

- 총점차등 전에 적용(조례상 비리 감점)

구분	업체	설계평가 점수	감점	계	총점차등 (10%)	최종점수	비고
1위	A사	90		90	90	90	1위
2위	B사	87	- 5	82	70	70	3위
3위	C사	84		84	80	80	2위

- 총점차등 후에 적용(기타 감점)

구분	업체	설계평가 점수	총점차등 (10%)	감점	계	최종점수	비고
1위	A사	90	90		90	90	1위
2위	B사	87	80	- 5	75	75	2위
3위	C사	84	70		70	70	3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총 10점의”를 “총 15점의”로 한다.

별표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 부터 2년

별표2의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생략) ② ----- ----- 총 15점의 ----- -----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별표 2]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1. 적용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사유</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적용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당해심의</td> </tr> <tr> <td>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적발일로부터 1년</td> </tr> <tr> <td>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적발일로부터 1년</td> </tr> <tr> <td>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적발일로부터 4년</td> </tr> </tbody> </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반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사유</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th> <th style="text-align: center;">감점적용 기간</th> </tr> </thead> <tbody> <tr> <td>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당해심의</td> </tr> <tr> <td>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 </tr> <tr> <td>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td> </tr> </tbody> </table>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반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4.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5.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주1) ~ 주2) (생략)		주1) ~ 주2) (현행과 같음)																																			
2. 적용방법		2. 적용방법																																			

현행	개정안
가. ~ 나.(생략) <u><신설></u>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그 밖에 감점부과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u>